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76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정을호 · 조정식 · 이정문
윤종균 · 김문수 · 전현희
한민수 · 박지원 · 위성곤
이재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찰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결정서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심의) ① 교육감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볍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조치 내용 및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심의 요구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제8항 중 “전에”를 “전에 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	②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 감이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u>
6. (생 략)	<u>7. (현행 제6호와 같음)</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제 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과 결정 이유를 적은 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결정서에는 제12 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보고 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u>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u><신 설></u>	<u>제13조의2(재심의) ① 교육감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u>

	<u>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행위에 비추어 가법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 여야 한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심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조치 내용 및 결정 이유를 적은 조 치결정서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재 심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 육지원청에 명백한 하자의 발 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재심의 요구의 구 체적인 사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u> (생 략)	<u>제13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u> (현행 제13조의2와 같음)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담기구 구성) ① ~ ③ (생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 담기구 구성) ① ~ ③ (현행과

략)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 ⑨ (생략)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⑦ (생략)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 ⑰ (생략)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② (생략)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같은)

④ -----

-----제13조의3-----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전에 그 조치 내용을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⑨ ~ ⑰ (현행과 같음)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3조의3-----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 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 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 ----- ----- -----. ④ (현행과 같음)
---	---